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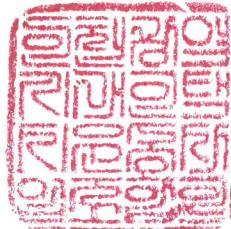
西紀 2023年 9月 16日 制定施行

특별회비운영규정

(조합부지매입에 따른 특별부과금)



仁川廣域市個人택시운송事業組合



목 차

제 1 조 (목 적)

제 2 조 (명 칭)

제 3 조 (적용대상)

제 4 조 (절 차)

제 5 조 (특별회비)

제 6 조 (납부방법)

제 7 조 (납부기간)

제 8 조 (운영방법)

제 9 조 (권리양수)

제 10 조 (청 산)

제 11 조 (경과규정)

제 12 조 (시 행)

제 13 조 (시 행 일)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10조 3항 특별부과금에 의거 조합건물의 노후화로 누수와 악취 및 냉기위험과 부지가 협소하여 부대 복지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조합부지매입 자금조성을 위한 특별회비 부과 및 운영과 청산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본 규정의 명칭은 조합부지매입 자금조성을 위한 특별회비운영규정이라 하고 약칭 부지특별회라 칭한다.

제 3 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전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 (절 차)

본 규정은 조합정관 제10조3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5 조 (특별회비)

조합 이전 부지매입특별회비는 600,000원으로 하며, 본인이 원할시 최대 120만원을 납부할 수 있다.

제 6 조 (납부방법)

부지특별회비 납부는 1년(12개월)동안 매월 50,000원씩 분할납부로 한다. (일시불도 가능하다)

납부방법은 조합회비, 복지회비와 함께 청구달에 함께 부과한다.(단, 신규 가입자는 가입시 특별회비 60만원과 매년 평가하는 조합부지 평가 수입금을 조합 가입금에 포함하여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납부기간)

본 특별회비 납부기간은 1년간 매월 분납 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의원회에서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운영방법)

본 특별회비는 부지구입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별도 계좌로 분리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 감사는 감사보고시 특별회비가 목적에 맞게 운영 되는지 여부를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 9 조 (권리양수)

본 특별부과금은 신규가입조합원이 가입 전년도 조합부지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가입비에 포함하여 권리를 양수받는다.

제 10 조 (청 산)

본 특별회비는 조합원 탈퇴(차량양도, 임의탈퇴등)시 특별회비 납부금액 전액과 부지 평가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단, 부지감정평가는 년1회 12월31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여 다음 년도에 적용한다) 단, 120만원 납부한 조합원의 청산은 신규조합원 인수 금액의 나머지를 조합에서 지급한다.

제 11 조 (경과규정)

본 특별부과금은 예산부족으로 부지매입이 무산 되었을 시 기납부한 특별회비는 즉시 전액 반환한다.

본규정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조합정관과 각규정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12 조 (시 행)

본 규정 대의원회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3 조 (시 행 일)

본 규정은 2023년 9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